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정책과)

의안번호	제256호
제 출 자	정윤주 의원 외 13명(2024. 2. 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라.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10조)
- 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일자리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시행 2022. 6. 16.] [법률 제 18285호, 2021. 6. 15., 제정])에 따라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북구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문기관 위탁,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가사노동은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 없이 행하는 비공식 노동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음.

그러나 직업소개소나 지인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고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을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음.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2021.6.15.제정, 2022.6.16.시행).

○ 조문별 주요 내용

- 안 제1조 : 조례안의 목적으로 **가사노동자¹⁾**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함.
- 안 제3조 : 적용대상으로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로 규정함.
- 안 제6조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해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부문별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 안 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 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법의 시행에 맞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상태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